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31
----------	-----------

제안년월일 : 2019년 09월 04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 성안을 위해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립묘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 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해 수정함.

2. 주요내용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내 설치된 분묘를 개정하여 화장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④ 시장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자치구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또는 서울시 도시자연공원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내 ----- ----- ----- ----- ----- -----.</p>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